

의안번호	제526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자	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3월 4일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박병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6
----------	-----

발의연월일 : 2024년 3월 4일

발 의 자 : 박병천·김현문·이정범
박용규·박재주·유상용
이양섭 의원

1. 제안 이유

충청북도 내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습 능력 및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향상시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지원사업(안 제5조)

마. 진단검사(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사. 시행규칙(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원활한 학습 활동과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으로 인하여 학습활동과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
3. 재원확보 및 지원 방법
4.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실태조사
5.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협력체계 구축·운영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점검표 보급
2.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 전문 진단검사 실시
3.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4. 경계선 지능 학생 지도를 위한 학부모 상담 및 교육
5. 경계선 지능 학생 조기 발견 및 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
6. 경계선 지능 학생 전문 기관 연계 및 상담·치료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진단검사)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도구·방법 등 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지원계획에 포함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알려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적 지도 및 전문 진단검사, 치료기관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2. 12. 27.>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2. 12. 27.>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7.>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22. 12. 27.]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2. 1.] [대통령령 제34156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개정 2016. 8. 2., 2023. 6. 27.>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8. 2., 2023. 6. 27.>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2. 4. 20., 2013. 3. 23., 2016. 8. 2., 2022. 8. 30., 2023. 6. 27.>

1.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22. 8. 30.>

⑤ 삭제<2017. 5. 8.>

⑥ 삭제<2017. 5. 8.>

⑦ 삭제<2023. 6. 27.>

⑧ 삭제<2023. 6. 27.>

[제목개정 2013. 10. 30., 2023. 6. 27.]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학년(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년을 말한다), 성별, 주소 및 연락처

2. 학생의 소속 학교(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교를 말한다) 및 관할 교육청(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학생이 학업 중단 후 소속 기관이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포함한다)
3. 학생의 교과목 이수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교육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3년
2.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10년.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①

교육감은 교원이법 제28조 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판별·진단·지도·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6. 27.]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 개요

-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 및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 및 지원 운영 비용 발생

3. 관련 조문

-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제5조)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점검표 보급
2.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 전문 진단검사 지원
3.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시행 지원
4. 경계선 지능 학생 지도를 위한 학부모 상담 및 교육 지원
5. 경계선 지능 학생 조기 발견 및 지도를 위한 교사 교육 및 연수 제공
6. 경계선 지능 학생 전문 기관 연계 및 상담·치료 지원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 기간: 2024 ~ 2028년(5년간)

- 추계 결과

-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비로 2024~2028년 5년간 1,45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270,000	280,000	290,000	300,000	310,000	1,450,000
보통교부금		243,000	252,000	261,000	270,000	279,000	1,305,000
특별교부금		27,000	28,000	29,000	30,000	31,000	145,000
세 출		270,000	280,000	290,000	300,000	310,000	1,450,000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비		270,000	280,000	290,000	300,000	310,000	1,4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70,000	280,000	290,000	300,000	310,000	1,450,0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243,000	252,000	261,000	270,000	279,000	1,305,000
	특별교부금	27,000	28,000	29,000	30,000	31,000	145,000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